

보도시점 2024. 6. 19.(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4. 6. 18.(화)

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하수도 시설 개선... 지자체 신청 접수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현장조사 등 평가 거쳐 10월 말 선정 지역 고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후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도시침수대응 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가 완료되어 침수피해 우려가 해소되었다.

이번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여 환경부에 최종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신청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선정 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후 10월 말에 선정 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 및 해제*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 중점관리지역 지정 목적 달성(사업 완료 등)으로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계획.
2.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현황(2013~2023).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생활하수과	책임자	과 장	윤태근 (044-201-7020)
		담당자	사무관	성연주 (044-201-7025)

□ 목 적

-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발생(또는 우려), 공공수역 수질 악화(또는 우려) 지역 등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시행, 하수관 키우기, 저류시설·펌프장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
- ※ 근거 법령 : 하수도법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 그간 경과

- ('12.4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대책 마련
- ('13.2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하수도법 개정)
- ('13~'23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94개 지역 지정

□ '24년 지정(변경 등)계획

- (추진절차) 지자체 수요조사(6~7월)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8~10월) → 선정위원회 심사(10월 중) → 지정·공고(10월 말)
 - 수요조사 :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계획 안내 및 지정신청서 제출 요청
 - 서류현장조사 : 침수피해 이력, 하수도정비 시급성, 타 사업과 중복성 등에 대해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환경부지방청·환경공단·지자체 합동)
 - 선정심사 : 지정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 선정위원회(선정 위원 6명 내외로 구성) 평가를 통해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

○ (지정 기준) 과거 ①침수피해가 있거나 ②침수 우려지역으로 인정된 지역 선정

- 사업별 침수면적, 침수횟수, 사업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된 지역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 및 등급화
- 신청지역 중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따른 부처공동사업지역 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따른 내수재해위험지구는 가점을 반영하여 고려
- ※ 선정기준 향후 지자체 신청현황 및 위원 사정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변경 등 기준) 하수도법 제4조의3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지정의 변경 및 해제 가능

- 변경조건 :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의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변경되는 경우
- 해제조건 :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목적 해소(사업 완료 등)로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4.4.)」 개정

붙임 2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2013~2023)

□ '13년부터 '23년까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94개 지역 지정

구분	지정	지자체	'13년 1차(2.2.) 2차(12.26.)	'14년 (12.17.)	'15년 (12.1.)	'16년 (6.28.)	'17년 (12.26.)	'18년 (12.12.)	'19년 (9.27.)	'20년 1차(9.29.) 2차(10.30.)	'21년 (11.8.)	'22년 (11.29.)	'23년 (10.31.)
계	194	86	21	11	11	10	11	12	12	26	21	38	21
서울	2	1										서울(반포1) 서울(효자)	
부산	13	1			금정(금사남) 동래(온천)		사상(사상)	연제 (온천천)	동래(온천천)	연제구 (거제천) 지곡 (중앙시장)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해운대구 (센텀) 남구(용호)	우암동 (우암)	사하구(강변) 중구(초량)
광주	4	1										광주(서방천) 광주(극락천)	광주(공구의거리) 광주(계림동)
대구	4	1		중구 (신천좌안) 남구(월성)				동구(금호)		수성구(신천)			
대전	3	1					중구(유천2)	서구(유등천)		서구(갑천)			
세종	2	1							조치원 (조치원)		조치원(신안)		
경기	23	12	부천(굴포) 안산 (본오·군자) 인양(석수4)	가평 (현리·청평)	수원 (장다리안계) 가평(가평)		구리(인창)	연천(연천)	의정부(송산)	연천(신서)	구리 (돌다리·세말· 말기원) 의왕(오전1)	광명(하안) 부천(삼정) 안양(안양1) 용인(동력천)	인양(평촌45) 인양(안양23) 인양(관악2) 의왕(삼동1) 의왕(오전1) 수원(영화) 화성(발안천)
강원	15	7	삼척(오십천) *2차설계중 춘천(우두)	춘천(근화)						속초(영랑) 속초(중앙2) 속초(조양2)	강릉(경포천) 강릉(교향) 강릉 (남해천 우안)	고성(자사천) 고성(북천) 동해(송정B) 동해(북평) 동해(송정C) 화천(하리1)	
충북	19	6					청주(내덕) 청주(석남천)	청주(무심천)	청주(수곡) 충주(충주천) 충주(연수천) 제천(제천)	청주(석남천) 진천(진천)	청주(명암) 청주(영운) 음성(음천) 음성(오갑천)	청주시지 청주(운천) 충주(충주천) 충주(교향천) 보은(삼산) 보은(이평)	
충남	19	12	논산(종교천) 천안(천안) 서천(판교천) 홍성(상지) 부여 (구교·구암) 예산(예산)	보령 (동대·궁촌)			천안 (삼룡·원성)	아산(곡교천)		아산(곡교천)	아산 (온양2, 5동) 아산 (온천동)	서산(서산) 홍성(남부)	당진(당진) 공주(금강2) 부여(K07) 금산(마천) 천안(성정)
전북	4	3	군산(산북) *2차설계중	부안(줄포)		부안(부안)						익산(오산)	
전남	33	15	목포(남해) 광양(광양) 여수(세구지) 순천(조곡) 진도(성내) *2차설계중	완도(완도)	무안(사천) 무안(천장) 영암(대불)	나주(남평) 순천(남제) 무안(남창) 무안(회산)	여수(여천)	보성(주암호) 함평(함평)	여수(중앙)	함평(학교) 함평(월야) 함평(남내) 구례 (봉남·봉서) 구례 (남천·금평2) 무안(동호) 영광(영광)	함평(대동)	고흥(녹동천) 고흥(고흥천) 나주(중부4) 나주(중부23) 나주(남부2) 여수(연동)	영암(용암)
경북	27	13	성주 (이천하류)	봉화 (동부·서부) 고령(읍내)	포항 (중부·남부) 구미(원평)	안동(중구1) 상주(중앙)		포항(형산) 영덕(영덕)	구미(구미)	문경(모전) 문경(점촌) 영덕(죽산) 안동(풍산) 예천(예천1)	경주(서천) 경주(동천) 청도(고수) 청도(원정) 영덕(송천2)	경주(충화) 포항(구룡포) 포항 (공단·남부) 포항(공단2) 포항(연일)	영덕(남천) 영주(사천) 하류좌안
경남	22	10	김해 (활천·회현) 고성(남부) 창녕(남지)	창원(산호천) *2차설계중 밀양(외송)	밀양(무안) 김해(안막)	사천(사천) 함안(말산)	고성(고성) 김해(활천) 양산(강서) 양산(물금)	거제(신현) 양산(북정)	김해(공단) 밀양(내이) 밀양(가곡)	통영(중앙)	사천(동부)	고성(회화)	밀양(삼문)
제주	4	1				제주(삼화)						제주(김녕) 제주(대정)	제주(화북)